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2호 2021. 12. 30.(목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88호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489호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490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10
○ 하동군 조례 제2491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2
○ 하동군 조례 제2492호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15
○ 하동군 조례 제2493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7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75호 하동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 규정·····19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51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21
○ 하동군 고시 제25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2
○ 하동군 고시 제259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24
○ 하동군 고시 제26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25
○ 하동군 고시 제2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29
○ 하동군 고시 제264호 2021년 하반기(추가2차)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고시·····33
○ 하동군 고시 제266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화개면 탑리 일원 다목적 보 정비사업) 36
○ 하동군 고시 제272호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37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1-1860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39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8 호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공공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군민·군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검토·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하동군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
3.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 이해관계인 대표
4.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의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⑨ 위원의 임기는 사안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⑩ 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담당 부서가 구성·운영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갈등 관리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89 호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서 작성 및 통보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2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남/여)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제7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제출의견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성명 담당자연락처	검토일자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90 호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시설을”을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하동군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로 한다.

제15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센터 설치・운영 등) ① --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하동군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
<신 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③ 군수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91 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5조제3항 관련)**

종 류	재활용 가능품목(재활용품)	안되는 품목 (규격봉투에 담는 품목)
종 이 류	○ 신문지, 책, 노트, 복사지 등 ○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등 ○ 종이컵, 우유팩 ○ 종이상자류(과자, 과일상자 등) ※ 배출요령 : 종이류에 붙은 스프링,클립,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종이컵, 우유팩은 안을 깨끗이 씻어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류 (광고지, 포장지, 각종 홍보 유인물 등) ○ 팩스용지, 사진 ○ 화장실 사용휴지 ○ 오물이 섞여있는 종이 (페인트 등)
공 병 류	○ 음료수병, 주류병, 드링크병, 기타병류 ※ 배출요령 : 담배꽁초 등 물질 제거 후 배출	○ 유백색(우유빛깔) 유리병 ○ 거울, 각종 도자기류, 내열식류 ○ 형광등, 전구 등
고 철 류	○ 음료용캔, 식품용캔, 분유, 통조림캔 등 ○ 에어졸, 부탄가스용 캔 ※ 배출요령 : 담배꽁초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에어졸, 부탄가스용 캔은 구멍을 뚫어 배출 ○ 공구, 철사, 못, 철판등쇠붙이 ○ 알루미늄, 스텐, 구리 등 ※ 배출요령 :고철에 붙어있는 고무, 플라스틱 등 이물질 제거하고 부피를 줄여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질 포장통
플라스틱류	○ 페트병류(PET) · 음료수병(쥬스, 콜라, 생수병 등) · 간장병, 식용유병 등 ○ 각종식. 음료용 용기류 · 야쿠르트, 삼푸, 세제용기 ○ 기타 용기류 · 상자 (맥주, 콜라, 사이다, 소주) · 쓰레기통, 쓰레받기, 스치로폼 **※ 배출요령(신설)** **- 내용물은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이물질을 제거하여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페트병류 중 무색페트병은 유색페트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용기·전화기, 소켓, 대야, 냄비손잡이·단추, 화장품용기, 식기류, 재떨이 ○ PVC류 용기 · 파이프, 빗물홈통 등 · 복합재질 용기 · 과자, 라면봉지, 식품포장 용기 등 ○ 플라스틱과 철사가 합성된 제품·옷걸이 등 ○ 기타 - 가전제품케이스, 정화조 등
폐스치로 폼류	○ 고기상자류 및 과일상자 등 포장재류 ※ 배출요령 : 이물질 제거 하고 일정량씩 묶어 배출	○ 컵라면 용기 등 1회용품 용기
기 타 류	○ 면제품류 : 순모양복, 내의 등 ※ 배출요령 : 단추, 지프 등 이물질 제거하고 물에 젖지 않게 배출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기타 전지 등 ※ 배출요령 : 품목별로 읍.면 사무소 폐건전지 수거함 배출	○ 한복, 담요, 솜, 베개, 카페트 등 ○ 입을 수 없는 가죽제품, 1회용 기저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 및 출・퇴근 시간과 작업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폐기물 처리 기동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92 호

하동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건축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하동군 건축 조례」제8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전문위원회(건축구조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하 한다)의 위치와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
2. 센터장은 제1호의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인력(이하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센터의 업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93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도로, 용수공급시설”을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① 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운영·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을 “(공유재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3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4호”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을 “사용·수익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 받거나 매입할 수 있”을 “대부를 받”으로, “20명”을 “10명”으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제38조 및 제39조로 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거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 ---------- ---------- ---------- ---- 항만,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 ---------- ----------.
<신 설>	제27조의2(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① 대송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기업이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운영・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내에 하동군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의 임대) ①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 사용・수익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대부---.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 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제24조에 따른 전략산업투자기업에 한하며, 20명 이상 상시고용 인원을 5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 대부를 받---------- ---------- 10명 ---------- --.
<신 설>	제37조(산업단지 분양전문대행사 지정) 군수는 대송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분양전문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7장 보칙
제37조・제38조 (생 략)	제38조・제39조 (현행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음)

「하동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발령한다.

2021년 12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75 호

하동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관내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하동군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유·무선단말장치”란 마을앰프를 통해 전달하는 홍보 및 긴급상황을 유·무선의 통신수단을 통해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용 스피커 장치를 말한다.
3. “휴대전화 수신장치”란 마을회관과 떨어진 외부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교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10년 이상 된 노후 마을방송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설치 신청 및 선정) 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설치 및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교체 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① 해당 마을 운영책임자는 마을방송시스템으로 마을 공지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마을방송시스템으로 산불예방, 행정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비상사태(태풍, 지진 등)발생 시, 재난담당부서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으로 긴급방송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을 위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관리 및 비용부담) ① 마을회관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해당 마을에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훼손이나 분실 등의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서 원상복구 한다.

②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비용(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군(읍·면포함)에서 부담한다.

③ 세대에 배부된 가정용 유·무선단말장치는 해당 세대에서 관리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고시 제2021 - 251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1조 6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13.

하 동 군 수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내용

시설명	위 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일	고시사유	비고
고전초등학교 고남분교장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지내	2021. 12. 13.	폐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담당(☎055-880-2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1 - 257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558-16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1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558-16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소축길 85-2	20211215		20090302	작은 둔이 여서 소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65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105	20211215		2008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759-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길 73-13	20211215		20080402	뒷산이 병풍처럼 싸여져 있고 앞 냇물이 휘어 들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824-1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991	20211215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112-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87-16	20211215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285-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11-27	20211215		20080402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354-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구시장길 13	20211215		20080402	옛날부터 유명한 문암시장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398, 415-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380	20211215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238-1, 1238-2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계성길 13	20211215		20070618	계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50-1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장환길 104-15	20211215		20080402	장환이라는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48-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수박등길 16-1	20211215		20070618	안장봉의 지맥이 동쪽으로 흘러 둥근 봉우리를 맺었는데 그 형태가 수박같다하여 붙여진 옛 지명에서 유래	

하동군 고시 제2021-259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 12. 15.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 재 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3354			중부	169813.21	277214.60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47	2020-09-18	철재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55			중부	169810.26	277277.14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47	2020-09-18	철재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56			중부	169583.64	277472.20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49	2020-09-18	철재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57			중부	169576.36	277403.40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50	2020-09-18	철재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58			중부	169603.25	277358.95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50	2020-09-18	철재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59			중부	169626.18	277298.03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50	2020-09-18	철재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0			중부	169673.01	277158.61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156	2020-09-18	철재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1			중부	169800.49	276954.69		하동군 고전면 명교리 517-6	2020-09-18	철재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2	34-58-36.72968	127-55-02.40017	중부	264913.182	283766.481	2.565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604.65	283692.06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3	34-58-33.56991	127-55-04.48853	중부	264816.290	283820.349	16.536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507.76	283745.93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4	34-58-31.63198	127-55-05.28083	중부	264756.752	283840.996	18.074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448.22	283766.58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5	34-58-28.98802	127-55-06.06065	중부	264675.451	283861.526	4.187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366.92	283787.11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6	34-58-27.17983	127-55-04.17211	중부	264619.287	283814.131	1.853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310.76	283739.72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7	34-58-27.23254	127-55-01.11760	중부	264620.200	283736.633	2.230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311.67	283662.22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8	34-58-28.98954	127-54-58.96853	중부	264673.847	283681.621	1.174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365.31	283607.21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69	34-58-31.28525	127-54-55.59010	중부	264743.811	283595.273	1.771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435.28	283520.86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70	34-58-31.99961	127-55-09.45786	중부	264769.055	283946.848	31.187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기타	세계측지계
					164460.53	283872.43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71	34-58-30.61706	127-55-12.86525	중부	264727.243	284033.674	33.355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418.72	283959.26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72	34-58-30.77489	127-55-147.61462	중부	264732.516	284078.005	31.639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기타	세계측지계
					164424.00	284003.59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73	34-58-32.61384	127-55-19.24022	중부	264790.270	284194.818	10.414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481.76	284120.40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3374	34-58-28.70611	127-55-19.61206	중부	264669.929	284205.361	1.817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4	2020-10-06	철재	세계측지계
					164361.41	284130.95					지역측지계

★ 측량성과 보관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1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1.
3. 점·사용의 목적 : 대지사용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34(인접 : 궁항리 490)
5. 점·사용 면적 : 129㎡
6. 점·사용의 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 김*욱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2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1.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895(인접 : 운수리 693)
5. 점·사용 면적 : 15㎡
6. 점·사용의 기간 : 2021. 12. 20. ~ 2026. 12. 19.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화개면 맥전길 **, 송*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3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1.
3. 점·사용의 목적 : 대지사용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934(인접 : 궁항리 490)
5. 점·사용 면적 : 11㎡
6. 점·사용의 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 이*란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4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1.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741(인접 : 흥룡리 34)
5. 점·사용 면적 : 99㎡
6. 점·사용의 기간 : 2022. 12. 23. ~ 2026. 12. 22.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 임*두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5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6.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750-8(인접 : 법대리 676-18)
5. 점·사용 면적 : 125㎡
6. 점·사용의 기간 : 2022. 03. 07. ~ 2026. 03. 06.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 권*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6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6.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1317(인접 : 궁항리 408)
5. 점·사용 면적 : 180㎡
6. 점·사용의 기간 : 2022. 01. 10. ~ 2027. 01. 09.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양보면 양보로 **, 박*창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7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16.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66(인접 : 덕은리 552-2)
5. 점·사용 면적 : 38㎡
6. 점·사용의 기간 : 2022. 02. 20. ~ 2027. 02. 19.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화개면 영당1길 **, 민*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8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16.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3-1(인접 : 전도리 187)
5. 점·사용 면적 : 35㎡
6. 점·사용의 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고전면 전도2길 **, 이*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리이전**)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12-14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6.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762
5. 점·사용 면적 : 793㎡
6. 점·사용의 기간 : 2021. 11. 01. ~ 2026. 10. 30.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49번지길 **, 수리힐링연구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리이전**)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14-42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6.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72-6
5. 점·사용 면적 : 400㎡
6. 점·사용의 기간 : 2021. 01. 01. ~ 2025. 12. 31.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49번지길 **, 수리힐링연구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51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7.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49(인접 : 고절리 674-6)
5. 점·사용 면적 : 24㎡
6. 점·사용의 기간 : 2021. 12. 08. ~ 2026. 12. 07.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강선길 **, 류*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52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7.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64(인접 : 고절리 674-6)
5. 점·사용 면적 : 8㎡
6. 점·사용의 기간 : 2021. 12. 08. ~ 2026. 12. 07.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강선길 **, 류*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53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7.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3(인접 : 고하리 410-1)
5. 점·사용 면적 : 11㎡
6. 점·사용의 기간 : 2021. 12. 08. ~ 2026. 12. 07.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전라남도 광양시 방죽로 **, 손*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54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08.
3. 점·사용의 목적 : 가설건축물 축조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017-1(인접 : 청룡리 142-38)
5. 점·사용 면적 : 25㎡
6. 점·사용의 기간 : 2021. 12. 09. ~ 2024. 11. 30.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 옥종농업협동조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1 - 26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1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1-56호
2. 허가연월일 : 2021. 12. 16.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168(인접 : 감당리 681)
5. 점·사용 면적 : 16㎡
6. 점·사용의 기간 : 2021. 12. 20. ~ 2026. 12. 19.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월진길 **, 김*원

하동군 고시 제 2021 - 264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1년 하반기(추가2차)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21. 12. 20.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1년 하반기(추가2차)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880-24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사방지 지정 조서
(2021년추가(2차)계류보전사업-하동북천방화지구)

토 지 소유자	성 명	하동군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토 지 소 재 지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산28-4		
조 사 년 월 일		2021년 11월 23일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2021년 11월 23일		
사방지 지정 면적		102	㎡	
사방지 지정 사유		2021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조 사 자 직 급 : 지방녹지서기

성 명 : 이 혜 령 (인)

사방지 지정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사업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319,934	102				
하동	북천	방화	산28-4	임	319,934	102				2021년 추가(2차) 계류보전사업 (하동북천방화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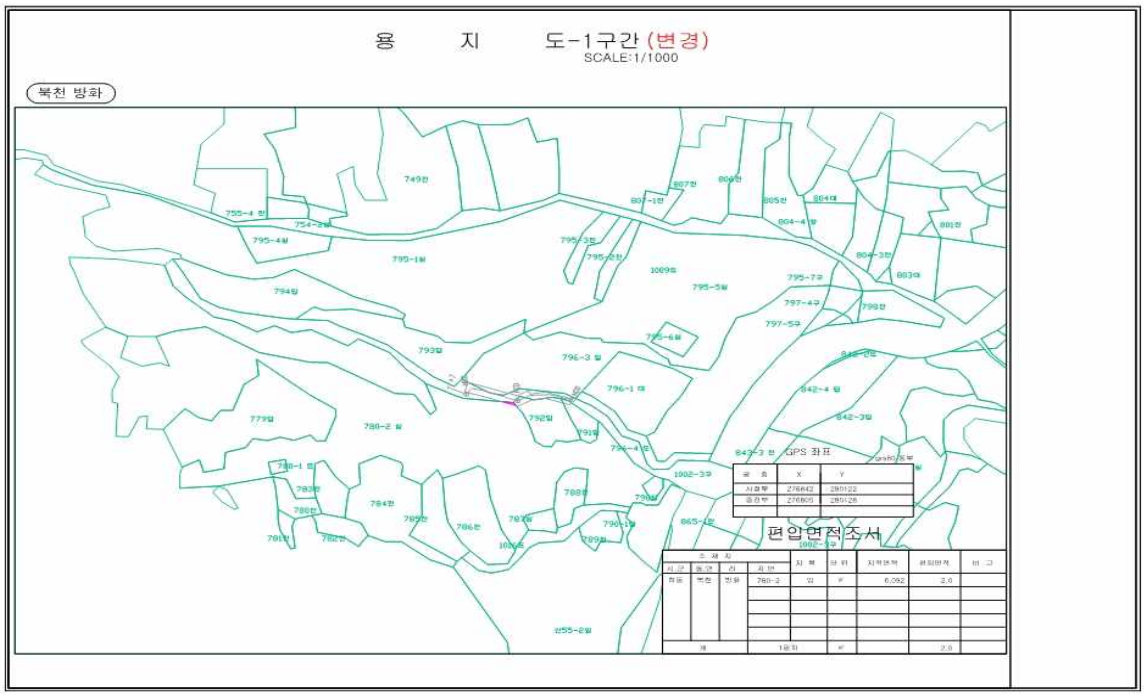
용 지 도-1구간 (변경)
SCALE:1/1000
북천 방화
GPS 좌표
편입면적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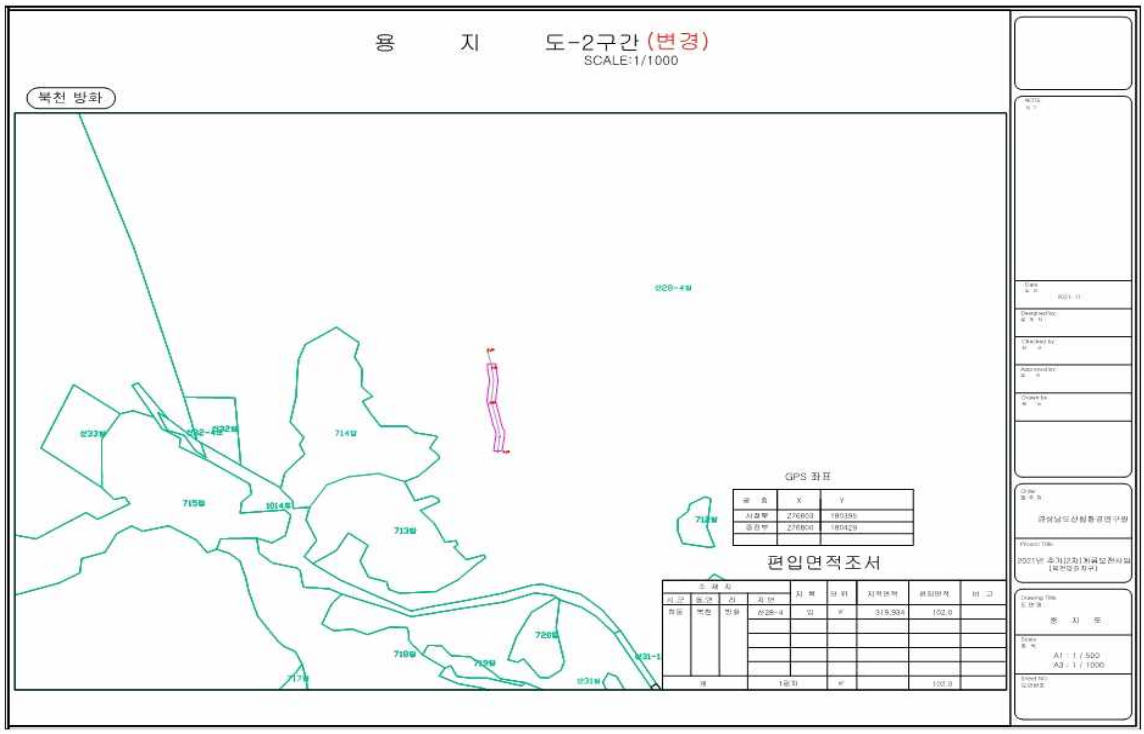
용 지 도-2구간 (변경)
SCALE:1/1000
북천 방화
GPS 좌표
편입면적조서

하동군 고시 제2021-266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하 동 군 수

1. 하천공사시행계획 : 명칭, 위치, 목적 및 개요, 착·준공예정일

구분	명 칭	하천명	위 치			목 적	공사개요	공 사 기 간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사업명	화개면 탑리 일원 다목적 보 정비사업	화개천	하동	화개	탑	화개천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 제공	- 가동보 설치 B=64.9m, 1.5m - 어도 설치 L=45m	2020.12.28. ~ 2022.9.29.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하 동 군 수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4.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화개면 탑리 일원 다목적 보 정비사업

1,190백만원

※ 관계도면은 하동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1-272호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경상남도 하동군수

Ⅰ.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축물 기준가격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①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가감산 등
② 적용지수 : 건축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③ 경과연수별 잔가율
④ 건축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⑤ 증·개축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부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하동군 재정관리과에 비치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⑦ 기준가격표

다. 선박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잔가율표 ⑥ 산출예시

라. 항공기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⑥ 산출예시

마. 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사. 입목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산출방법
⑥ 적용요령

아. 어업권

① 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① 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시·군 세무과(재무과)에 비치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21- 186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점용사용 기간 연장 및 권리이전)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김종회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목압길 8
소하천명		목압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876(인접 : 운수리 687-4)		
	면적	2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04. 13. ~ 2026. 04. 12. ※ 기타사항 점용허가조건 참조		
	목적 및 사유	진입구 다리사용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